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일자 : 2011년 11월 일
발 의 자 : 이화숙의원외3인

1. 개정이유
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양육지원금 증액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지원을 증대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과 양육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 : 출산양육지원금 증액 지원(안 제5조)

○ 셋째아
- **월 30만원 1년간 지원→월 50만원 1년간 지원**(안 제5조제3항제3호)

○ 넷째아 이상
- **월 30만원 1년간 지원→월 70만원 1년간 지원**(안 제5조제3항제3호)

○ 성주아기보험금 증액 지원
- **20만원 이내 1회 지원→월 1인당 30천원 이내로 3년간 지원**
(안 제5조제4항)

○ 성주아기보험금 지급 절차 변경(안 제6조제3항)
- **대상자 보험계약 확정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**

○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 변경(안 제6조제10항)
- **신청서를 검토 후 14일 이내 → 매월 14일 이내 지급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제4조, 제8조, 제10조
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8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예산반영

다. 기 타

(1) 개정조례안 : 붙임

(2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출산·양육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셋째아”를 “셋째, 넷째아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보건(지)소 등록”을 “군에 등록된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보건(지)소”를 “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영아 양육 지원금
 - 첫째아 : 월10만원 1년간 지원
 - 둘째아 : 월20만원 1년간 지원
 - 셋째아 : 월50만원 1년간 지원
 - 넷째아 이상 : 월70만원 1년간 지원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성주아기보험 : 매월 1인당 30,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당월 등록된 임부의 명단을 익월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,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읍·면장은 신청서”를 “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보건지소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신청인의 임부등록 여부

제6조제9항 중 “보건소”를 “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“보건소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, “14일”을 “매월 14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”을 “주민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, 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보건소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·배부하며, 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 대장인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“출산양육지원금(이하 지원금이라 한다)”이란 출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말하며 첫 임신, 첫째, 둘째, 셋째아 이상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, 첫돌 축하금을 포함한다.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 셋째, 넷째아 ---------- ---------- ----.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대상) ① (생 략)	제4조(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성주아기보험 지원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(지)소 등록 임부 및 당해연도 그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 및 영유아로 한다.	② ---------- 군에 등록된 -- ----------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원금액) ① (생 략)	제5조(지원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녀수에 관계없이 보건(지)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출산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군 ------ ---------- ---.

현 행	개 정 안
③ 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의거 출생생존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영아 양육 지원금 - 첫째아 : 월10만원 1년간 지원 - 둘째아 : 월20만원 1년간 지원 - 셋째아 이상 : 월30만원 1년간 지원	3. 영아 양육 지원금 - 첫째아 : 월10만원 1년간 지원 - 둘째아 : 월20만원 1년간 지원 - 셋째아 : 월50만원 1년간 지원 - 넷째아 이상 : 월70만원 1년간 지원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④ 성주아기보험 : 20만원 이내 1회 지원	④ 성주아기보험 : 매월 1인당 30,000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할 수 있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신청 및 지급절차) ①·② (생략)	제6조(신청 및 지급절차)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보건소장은 당월 등록된 임부 및 보험에 가입한 임부가 출산한 신생아의 명단을 익월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	③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당월 등록된 임부의 명단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,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읍·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	⑥ 신청서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각 보건지소장은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1. 신청인의 보건(지)소 임부등록 여부 2. (생 략)	⑧ 군수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신청인의 임부등록 여부 2. (현행과 같음)
⑨ 읍·면사무소 및 보건(지)소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.	⑨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군으로 ----------.
⑩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14일 이내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.	⑩ 군수는 ---------- 매월 14일 ---------- ----------.
제7조(환수 및 중단 등) ① (생 략)	제7조(환수 및 중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주민등록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	③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) 보건소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임산부, 영유아에 대하여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에 의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	제8조(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) 군수는 ----------.
제10조 (대장 등 비치)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·면장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·배부하며, 보건소장은 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 대장인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	제10조 (대장 등 비치)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의 서식을 비치·배부하며, 지원금 접수대장 및 지급 대장인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.